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수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경유)
제목 2025년 하반기 부동산투자회사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분 통지((주)코람코자산신탁)

1.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1401(2026.05.19.)호의 관련입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등에 따른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붙임1과 같이 행정처분 하오니, 이행결과 보고서(붙임2)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10일 이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 및 제출방법 : 리츠정보시스템 → 검사/감독 → 위반사항 → 조치결과

4. 아울러,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내용.
2. 이행결과 보고서(작성양식).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안갑순** 과학기술서기관 **오원택** 부동산투자제도 전결 2026. 07. 16.
과장 **김계홍**

협조자

시행 부동산투자제도과-2040 (2026. 07. 17.) 접수 M00020200420 (2026. 7. 20.)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12 팩스번호 044-201-5538 / ksan@molit.go.kr / 비공개(5,7)

K-헤리티지 ,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 ㈜코람코자산신탁 (시정명령 2건)

위반회사	위반사항		처분사항	
	위반내용	근거규정	조치종류 및 조치내용	근거규정
■ ㈜코람코자산신탁	① 법 제2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 결과 공시에 관한 사항 - (주)코람코자산신탁은 (주)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법 제2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2025.09.30.)를 받았으나,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음(공시일 : 2025.10.1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3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5-2조 제4항	■ 시정명령 - 향후 공시사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시 관련 업무철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6조 제1항
	② 자기자본 10%이상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시에 관한 사항 - (주)코람코자산신탁은 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강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총액 10% 이상 자산 취득 결정(2025.12.05)이 있었으나,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음(공시일 : 2025.12.19.)('26.1.16. 프로젝트리츠 전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2조 제3항 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 시정명령 - 향후 공시사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시 관련 업무철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6조 제1항